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남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03
------------	--------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백남환, 이학래, 김효식, 이봉수,  
전승학, 송병길, 이필례

##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정 및 평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와 대행사업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기간을 3년으로 확대(안 제9조제3항)
- 다.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후 대행업체 적정여부 판단토록 함(안 제9조제4항)
- 라. 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9조의2)
  - 1) 대행업체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2)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할 내용(청소 예정구역 등)
  - 3)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

- 4) 대행업체 변경 시 대행기간 동안 업무인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
  - 5) 대행업체 대행계약 해지할 때에는 해약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
- 마. 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신설(안 제9조의3)
- 1)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
  - 2)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 바.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9조의4)
-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9조의5)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 2)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 : 1명
    3. 주민대표 : 3명

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5.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3)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됨
- 5)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 위원회 회의 등 신설(안 제9조의6)

-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3. 관계법규

- 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필요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
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
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와 대행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를 제4조의2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차고"를 "차고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제3항 중 “대행기간”을 “구청장은 대행기간”으로, “2년”을 “3년”으로, “없는 경우에는”을 “없으며,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46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예정구역

2. 분뇨수집 · 운반 예정량

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

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9조의4(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 : 1명

3. 주민대표 : 3명
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5.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③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6(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li> <li>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li> <li>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li> <li>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li> <li>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li> </ol>

현 행	개 정 안
	<u>와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u>
<u>제2조 · 제3조 (생 략)</u>	<u>제3조 · 제4조 (현행 제2조 및 제3조 와 같음)</u>
<u>제4조 (생 략)</u>	<u>제4조의2 (현행 제4조와 같음)</u>
제9조(분뇨수집 · 운반 등의 대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 운반 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생 략)  <u>&lt;신 설&gt;</u>  ③ <u>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u>	<u>제9조(분뇨수집 · 운반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차고지</u> -----  5. (현행과 같음)  <u>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 한 사항</u>  ③ <u>구청장은 대행기간</u>----- <u>3년</u> ----- ----- <u>없으며,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u> ----- -----.</u>
<u>&lt;신 설&gt;</u>	<u>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평가 심사 위원회에서 대행기간 6개월 전까</u>

현 행	개 정 안
	<u>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u>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u> <p>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46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예정구역</li> <li>2. 분뇨수집·운반 예정량</li> <li>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li> <li>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li> <li>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li> </ol> <p>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p>

현 행	개 정 안
	<p>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 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p> <p>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p> <p>제9조의4(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p>

현 행	개 정 안
	<p><u>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u>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u></p> <p><u>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u></p> <p><u>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u></p> <p><u>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u></p> <p><u>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p> <p>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p> <p>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p> <p>2. 해당분야 전문가 : 1명</p> <p>3. 주민대표 : 3명</p> <p>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p>

현 행	개 정 안
	<p><u>5.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 분의 1 이하로 한다)</u></p> <p>③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p> <p>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u>제9조의6(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p>